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당할 수도 있는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평범한 일반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집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스톱킹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에서 스톱킹은 범죄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삶의 부분이라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스톱킹 사건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스톱킹의 피해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특별한 누군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스톱킹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여러 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스톱킹이 유명인과 불특정 팬의 관계보다는, 대부분 아는 관계 특히, 친밀했던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밝혀왔다. 즉 스톱킹 사건의 대부분은 이전의 친밀한 관계였거나 아니면 알고 지냈던 관계에서 더 빈번할 뿐 아니라 스톱킹과 가정폭력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Baldry, 2002; Coleman, 1997; Davis, Ace, & Andra, 2000; Logan, Leukefeld, & Walker, 2000; Mcechanic, Weaver, & Resick, 2000; Tjaden & Thoennes, 2000).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친밀한 관계 특히 부부사이에서의 스톱킹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례 1)

남편과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인 박모(32)씨의 경우 남편의 스톱킹이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고 있다. 별거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겠

다고 자꾸 집에 찾아오는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한다. 박씨는 “이미 남편과 남남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로 ‘사랑하고 있다.’ ‘헤어지면 안 된다.’ ‘아이 는 어떻게 하느냐.’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06년 7월 5일자. ‘스 톱킹 무서워 이혼도 못해..’)

사례 2)

서모(51)씨는 남편의 거듭된 미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남편과 갈라서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사무실 등을 찾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서씨를 따라다니고 있다. 서씨는 “주위에서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대화로 풀어보 라고 하지만 도가 넘은 남편의 행동으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헤어지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06년 7월 5일자. ‘스 톱킹 무서워 이혼도 못해..’)

사례 3)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스톱킹을 당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전화 협박은 물론 흉기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는 상태이다. ...중략... 스톱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얼마 전 광주에선 한 남자가 전처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다. 식당주인은 사망했고 전처 김모씨는 수차례의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사건 이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씨. 자신 뿐 아니라 관련 없는 타인까지 피해를 입어 충격은 더욱 컸다.

(출처: 파이미디어. 2006년 7월 15일자. '이혼 후 스토킹 심각.. 협박, 폭력, 살인까지')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스토킹은 매년 20만 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Roberts & Dziegielewski, 1996; Tjaden, 1997; USDOJ, 1998), 피해자들은 대부분 스토킹의 현재 또는 이전에 배우자이거나 친밀한 파트너였다(Baldry, 2002; Coleman, NIJ, 1996; Tjaden & Thoennes, 2000). 또한, 여성이 살인 피해자인 경우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중 25~54%는 매맞는 여성이었고 그들의 90%는 살해당하기 전에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다(Guy, 1993; USDOJ, 1998).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에서 신체적 학대가 스토킹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McFarlane, F. A. A. N., Campbell, & Watson, 2002)도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 중 신체적 학대 즉 폭력이 있었던 사례의 79%에서 스토킹이 보고된 것에 비해, 폭력이 없었던 사례에서는 49%만이 스토킹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배우자를 포함한 친밀한 파트너간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스토킹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 사이에서의 스토킹 행위가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배우자 살인이나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스토킹과 가정폭력 위험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가정폭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학대 유형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스토킹의 위험수준과 외국의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와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가정폭력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스토킹의 위험수준도 함께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스토킹의 위험수준에 따라 가정폭력 위험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본 조사 대상자를 몇 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본 범죄종류(살인/폭력), 일반전과 유무, 가정폭력전과 유무에 따른 스토킹 위험수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스토킹 징후의 의미를 논의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적절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 스토킹의 개념

국내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조금씩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킹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미 스토킹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외국 입법례에서 보이는 스토킹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내 연구들에서 정의되었던 스토킹의 개념을 살펴

불 것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해 많은 나라의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용어(harassment, threats, causing of fear, stalking 등)들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나라에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개념 역시 매우 상이함을 보인다(김은경, 2003).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기보다는 몇 개의 대표적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보는 것이 국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토킹 범죄란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타인을 뒤쫓거나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및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로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토킹이라고 특정을 하기 보다는 두 가지의 행위 즉, ‘괴롭힘 행위’와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한 행위’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 기준을 두고 있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다니기 등’ 행위로 이는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 친족, 기타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해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는 ‘스토커 행위’로, 이는 ‘따라다니기 등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법적인 개념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의(의도)성, 반복성, 위협(공포)등의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몇 연구들에서 스토킹 개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우선, 이시형 등(1998)은 스토킹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연애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에 접근해서 싫은 오후나 온갖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라고 언급하였다. 조희진(1999)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라 하였으며, 조국(2000)은 ‘각종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안겨주는 행위’ 라 하였다.

또한, 박철현 등(2000)의 연구에서는 스토킹이라는 것을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라고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 다른 연구(이건호 등, 2002)에서는 스토킹의 개념규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인 행위일 것, 둘째, 원치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일 것, 셋째,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일 것 등의 요건으로 구성된다. 즉 스토킹이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울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 행위 등)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부 선행된 연구들은 스토킹을 범죄라는 위협한 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사랑에 대한 지나친 집착정도로 보는 것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즉, 일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불쾌한 감정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에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스토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일치된 논의 없이 간헐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특정 정의를 따르기 보다는 외국에서 스토킹 행위를 평가할 때 쓰이는 항목들 중 국내의 사정을 반영하면서, 가정폭력 상황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스토킹에 대한 개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법적 정의에서부터 국내 연구의 정의까지 다양한데, 이렇게 정의되는 스토킹 행위들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스토킹 행위 유형은 부부나 애인 등과 같이 과거 또는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이다. 따라서 스토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에서 스토킹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전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학대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는 그 관계가 끝날 때라고 제안하는데, 이 시기에 스토킹이 많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Codes(1993)의 연구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 중 90%는 그들을 죽인 자 즉, 남편에게 스토킹을 당해왔음을 나타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83%는 배우자, 이전 배우자, 이전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저질러짐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Schaum & Parrish, 1995). 또한, 일부 연구들은 상대방과의 관계 지속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는데, Mechanic 등(2000)은 상대를 떠난 여성들에서 스토킹의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다. Logan 등(2000)은 스토킹이란 관계가 끝난 후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의 지속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스토킹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인데, 이는 ‘폭력의 순환(cycle of violence)’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1997). 미국의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이하 NVAW) 조사에 따르면, 현재 또는 이전에 남편, 또는 동거 파트너에 의해 스토킹을 당한 여성들 중 82%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Tjaen & Thoennes, 1998, 2000). 또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는 스토킹들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 행위가 보다 더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Coleman, 1997; Kohn, Flood, Chase, & McMahon, 2000; Meloy, 1996; Mullen, Pathe, Purcell, & Stuart, 1999). 또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 부상, 살인과 살인시도와 같이 심각한 폭력은 스토킹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전에 성적 친밀함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연구(Farnham, James, & Cantrell, 2000)도 있다.

신체적 폭력의 위험요인으로서 스토킹에 대해서, 학대에 대한 전문가들은 가장 위험한 가해자들은 그들의 스토킹 행위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Hart, 1988). 또한, 연구자들은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려는 시도로 인해, 특히 스토킹이 다른 위험 행위들과 함께 일어난다면, 미래의 신체적 학대나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Walker & Meloy, 1998).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관계에서 심각한 스토킹은 심각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Mechanic, Uhlmansek 등, 2000).

이처럼 스토킹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보다는 과거에 이미 알고 지냈거

나, 현재 알고 있는 특히, 친밀함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특징을 기준으로 몇몇 연구들은 스토킹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중 Sheridan과 Boon(2002)은 스토킹 행위자를 그 상대방과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가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다룬 실제 사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위유형 분류라는 점이 특징이다.

Sheridan 등(2002)이 분류한 유형은 스토킹 행위를 그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관련을 기준으로 과거 배우자 스토킹 행위, 애정추구형 스토킹 행위, 애정망상형 스토킹 행위, 가학적 스토킹 행위로 분류된다(이건호, 2004).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유형인 과거 배우자 스토킹(ex-partner harassment/stalking)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배우자 스토킹 행위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과 증오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로서의 관계에 있었을 당시에도 그런 감정이 폭력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삼가야 하며 가능한 한 행위자의 접촉으로부터 회피해야 하며, 특히 행위자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또 다른 연구(Mohandie, Meloy, A.B.P.P., McGowa,, Williams, Dipt, 2006)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스토킹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기초하여 스토킹을 유형화하였는데, 이는 RECON(relationship and context-based) 분류이다. RECON 분류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전의 관계와 스토킹이 일어나는 상황에 기초하여,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즉 Intimate, Acquaintance, Public figure, Private Stranger 유형이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Intimate Stalkers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지는데, 이에 속한 사람들은 폭력 범죄 기록, 약물남용 또는 알콜중독 등이 있지만, 정신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대상에게 빈번하게 접근하고, 따라다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한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이며, 이들 중 50% 이상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중 30% 이상은 자살적 사고나 자살적 행동의 증거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재범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재범을 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빨리 재범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성격장애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집중적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감독의 이용할 것 둘째,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즉시 위협이 증가한다는 것 셋째, 관계가 깨어져 분리되기 전에 가정폭력과 정서적 지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 넷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

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연구(이건호 등, 2002)에서는 스토킹 피해 집단을 가정폭력 피해자, 대학생, 연예인 집단으로 나누어, 괴롭힘의 강도 및 빈도와 시간경과에 따라 신체폭력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에서 심각한 괴롭힘의 강도와 빈도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비율은 나머지 두 집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괴롭힘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도 나머지 다른 두 집단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킹(괴롭힘)의 심각성 및 시간경과에 따른 폭력 강도 상승이 전술한 RECON 분류에 의한 Intimate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애정문제를 가진 남녀 관계에 대해 비정상적인, 즉 정신병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실행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70%에서 일어나며, 이들 중 단지 20%만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Farnham et al, 2000).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이 발견된다고 해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반드시 정신적으로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미디어에서 유명인에 대한 스토킹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행동은 친밀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과거 친밀한 관계를 지녔던 스토키가 대인이나 대물 폭력, 위협을 할 위험성이 더 많으며, 신체적 접근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받아 선정되었는데, 첫째, 교도소에서 살인(살인미수 포함)이나 과실치사로 복역 중인 재소자들 중 배우자 혹은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 48명과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남편을 살해한 여성 재소자 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때, 여성재소자 24명은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확인한 바,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되었음을 밝혀준다. 둘째,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가정폭력사범 4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총 120명이 설문응답하였고, 이 중 미응답이 많았던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2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한 교도소 재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 중 추후 면담에 동의하였던 교도소 재소자 30명과 보호관찰대상자 48명에게는 추후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한 보호관찰대상자 48명 중 배우자폭력 사건이 아닌 부모를 폭행한 자녀였던 대상자 등 7명은 본 연구의 목적인에 맞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던 설문지는 교도소 재소자 54명과 보호관찰대상자들 41명의 자료였다.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면담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은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작성하였으며, 이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들은 SARA(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 DAS(Danger Assessment Scale), PCL-R (Psychopath Checklist - Revised)이다.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폭력의 치명성, 일반폭력위험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 현재 널리 쓰이며, 잘 알려진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들인 SARA, DAS, PCL-R을 사용하였다.

SARA는 1994년 Kropp, Hart, Webster, 그리고 Eaves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2000년 Krop와 Hart에 의해 개정되었다(Grann & Wedin, 2002). 대상은 남성 가해자이며, 배우자 폭력에 대한 20개의 위험요인들을 평가를 평가한다. 평가자들은 3점 척도(0점은 해당없음, 1점은 부분적으로 또는 아마도 해당함, 2점은 확실하게 해당함)로 평가한다.

DAS는 1995년 피츠버그 대학의 Campbell과 동료 연구자들이 피학대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경험하였던 피학대 경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개발한 위험성 사정 척도이다. DAS는 장기화된 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학대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대에 기인

한 위협요인을 측정해준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PCL-R은 1980년에 Hare 박사는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 PCL을 개발했고, 1991년에 PCL-R로 개정하였다(Hare, 1996). PCL-R은 크게 2요인, 4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측면 1인 대인간 특징과 측면 2인 정서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요인 2는 측면 3인 생활방식과 측면 4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된다. PCL-R은 일차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측정도구이지만, 예언타당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Hare, 1996; Harris, Rice, & Cormier, 2002; Harris, Rice, & Quinsey, 1993; Douglas, Ogloff, Nicholls, & Grant, 1999)에서 폭력성 진반에 걸친 일반적인 평균 예측력(AUG)은 약 .68,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69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수정, 윤옥경, 2003).

본 연구에서 SARA의 신뢰도 중 내적합치도 계수( $\alpha$ )는 .80, DAS의 내적합치도 계수( $\alpha$ )는 .80, PCL-R의 내적합치도 계수(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도구 이외에도 가정폭력의 여러 학대 유형들 중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의처증, 자녀학대, 의처증,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도 측정하였다.<sup>1)</sup>

스토킹 항목들은 외국의 스토킹 조사 항목

중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가정폭력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7항목으로 배우자를 쫓아다니기, 집을 찾아가기, 물건이나 옷 등을 뒤지기, 상대와 연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법원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 집밖에서 배우자 모르게 기다리기였으며, 이 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0점, 1~2개 해당하는 경우 1점, 3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2점으로 채점하였다.

## 연구결과

###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자가 77명으로 81.1%를 차지하며, 여성은 18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7명(38.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30대, 60대, 7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보면, 수감중인 경우가 5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는 일용직이 13.7%, 운전 5.3%, 무직 4.2%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은 우선, 현 범죄명은 살인이 49명(51.5%)이며, 가

1) 가정폭력의 여러 학대 유형들은 2007년 법무부 용역과제인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연구'에서 개발된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의 평가항목 중 일부로 평가된 것이며, 후술되는 스토킹 항목 역시 WARA의 일부로서 평가된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대상자 분류	교도소	54(56.8)	성별	남	77(81.1)
	보호관찰소	41(43.2)		여	18(18.9)
	전체	95(100.0)		전체	95(100.0)
연령	20대(20-29세)	1 (1.1)	현재 직업	일용직	13(13.7)
	30대(30-39세)	11(11.6)		무직	4 (4.2)
	40대(40-49세)	37(38.8)		운전	5 (5.3)
	50대(50-59세)	30(31.6)		기타	18(18.9)
	60대(60-69세)	9 (9.5)		수감중	54(56.8)
	70대(70-79세)	2 (2.1)		무응답	1 (1.1)
	무응답	5 (5.3)			
	전체	95(100.0)		전체	95(100.0)

정폭력이 38명(4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살인미수, 상해·상해치사, 존속살인이 7명(7.4%), 협박재물손괴죄가 1명(1.1%)으로 나타났다. 전과 수는 본 범이 첫 번째 범행인 경우가 15명(15.8%)이며, 1범이 9명(9.5%), 2범이 6명(6.3%), 3범 이상이 24명(25.3%)이었다.

가정폭력의 발생 시점은 응답자들의 가정폭력 발생시점을 결혼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결혼 후 1년 내에 가정폭력 발생한 경우가 19명(20.0%)이며, 결혼 후 2년 내에 발생한 경우가 11명(11.6%)이었다. 또한, 결혼 전에 애인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8명(8.4%)으로 나타

표 2.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가정폭력 발생시점	결혼 전	8 (8.4)	범죄명	가정폭력(폭력)	38(40.0)
	결혼 후 1년	19(20.0)		살인	49(51.5)
	결혼 후 2년	11(11.6)		살인미수	3 (3.2)
	결혼 후 3년	6 (6.3)		상해, 상해치사	2 (2.1)
	결혼 후 4년	2 (2.1)		존속살인	2 (2.1)
	결혼 후 5년	3 (3.2)		협박재물손괴	1 (1.1)
	결혼 후 6년 이상	15(15.8)			
무응답	31(32.6)				
	전체	95(100.0)		전체	95(100.0)

났다. 추가적으로, 가정폭력 발생이 결혼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점은 결혼 12년 전이며, 가장 늦은 시점이 결혼 후 19년 6개월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스토킹 발생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스토킹 점수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0점인 경우는 53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였으며, 1점의 경우는 23명으로 24.2%를 나타냈다. 가장 심각한 스토킹을 나타내는 2점의 경우는 17명으로 17.9%를 나타냈다. 따라서 스토킹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절반을 좀 넘게 나타났으며, 1점 또는 2점으로 스토킹의 위험성이 나타난 사건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상당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 3.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스토킹 발생빈도

		빈도(명)	비율(%)
스토킹 점수	0점	53	55.8
	1점	23	24.2
	2점	17	17.9
무응답		2	2.1
전체		95	100.0

표 4. 가정폭력 학대 유형과 스토킹의 상관관계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의처증	자녀학대	경제적 학대
스토킹	.61**	.53**	.58**	.58**	.45**	.32**

\*\* $p < .01$

결과이다.

가정폭력의 학대유형과 스토킹의 상관관계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의처증, 자녀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학대 유형들과 스토킹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된 모든 가정폭력의 학대 유형들은 스토킹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61, p < .01$ ), 그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와 의처증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r = .58, p < .01$ ).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유형은 경제적 학대였다( $r = .32, p < .01$ ).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와 스토킹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로 측정된 가정폭력 위험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SARA 12.73(6.94)점, DAS 6.44(4.01)점, PCL-R 15.62(7.96)점으로 나타났다.

SARA, DAS, PCL-R 점수와 스토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의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는 스토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우선, SARA는 스토킹과 유의수준 .01에서

표 5. SARA, DAS, PCL-R과 스토킹의 상관관계

	SARA	DAS	PCL-R
스토킹	.44**	.62**	.26*

\* $p < .05$ , \*\* $p < .01$

.44의 상관을 나타냈다. DAS의 경우 스토킹과 유의수준 .01에서 .62의 상관을 나타내, 사용된 도구 중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PCL-R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26으로 유의하지만 비교적 적은 상관을 나타냈다.

#### 스토킹의 위험수준에 따른 가정폭력 위험성 차이

스토킹 위험수준을 저(0점), 중(1점), 고(2점)로 나누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SARA, DAS, PCL-R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그 결과, SARA와 DAS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토킹의 고위험 집단은 SARA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스토킹의 중위험 집단 역시 저수준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F=8.122, p=.001$ ). DAS의 경우 스토킹 위험수준에 따라 DAS의 점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는데, 특히 스토킹 위험의 중수준과 고수준 집단의 경우 7점 이상을 나타내어 가정폭력 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sup> PCL-R의 경우 통계적으로

2) DAS의 경우 Campbell과 Webster 등(2004)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살해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였는데, DAS의 변별기준을 7점으로 하였을 때, 예측 민감도는 58%, 예측 명

유의미한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스토킹 고위험 집단의 의 PCL-R 점수가 스토킹 저수준, 중수준 집단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3.028, p=.05$ )

#### 집단 특성에 따른 스토킹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여러 특성들 중 범죄의 위험성과 관련된 범죄종류(살인/폭력), 일반전과 유무, 가정폭력 전과유무에 따라 스토킹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7). 그 결과, 살인집단은 폭력집단에 비해 스토킹의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t=-2.45, p<.05$ ). 그러나 일반전과 유무에 따른 스토킹의 위험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정폭력 유무에 따른 스토킹의 차이는 나타났는데,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집단은 가정폭력 전과가 없는 집단에 비해 스토킹의 위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6, p<.05$ ). 이는 목숨을 잃게 되는 배우자 살인사건에서와 반복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확성 즉 특이도가 87%였으며, ROC 분석 결과, AUC는 90.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AS를 사용한 국내 연구(이수정, 2006)에서도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변별기준 점인 7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 응답자들인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DAS 평균값이 9.1점, 표준편차 5.05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DAS의 변별기준점을 외국과 동일하게 7점으로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표 6. 스토킹이 위험수준에 따른 가정폭력 위험성 차이

	스토킹 위험수준			F	Sig.	Scheffe
	저	중	고			
SARA	10.58(6.17)	15.78(7.43)	19.00(5.50)	8.122	.001	고, 중>저
DAS	4.51(2.89)	7.43(3.78)	11.00(3.28)	28.036	.000	고>중>저
PCL-R	14.62(8.04)	15.29(7.63)	22.01(6.85)	3.028	.055	

표 7. 집단 특성에 따른 스토킹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df	t
스토킹	살인	49	0.80(0.87)	91	-2.45*
	폭력	44	0.44(0.62)		
스토킹	일반전과 무	24	0.38(0.71)	72	-0.71
	일반전과 유	50	0.50(0.70)		
스토킹	가정폭력 전과 무	68	0.50(0.74)	91	-2.36*
	가정폭력 전과 유	25	0.92(0.81)		

\*p<.05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배우자 살인과 가정폭력 사건들에서의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부부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의 위험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가정폭력 피해 집단에서 스토킹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배우자 살인이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보호관찰 또는 교도소 수감중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학대 유형들과 스토킹, 가정폭력 위험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배우자 살인과 가정폭력 사건들에서 스토킹 행위의 유무, 가정폭력 학대 유형과 스토킹의 관련성, 스토킹

위험수준에 따른 가정폭력의 위험성의 차이, 기존 범죄경력에 따른 스토킹의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 및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간의 범죄(배우자 살인, 가정폭력)에서 스토킹이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95명의 대상자 중 스토킹이 나타난 경우는 40명으로 전체의 42.1%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건에서도 스토킹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유죄를 받은 120명 중 36명(30%)이 배우자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Burgess, Baker, Greening, Hartman, Burgess,

Douglas, & Halloran, 1997)와 스토킹과 가정폭력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스토킹 사건의 30~65%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났다는 결과(Douglas, Dutton, 2001)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학대 유형들과 스토킹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정폭력의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적 학대, 의처증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가정폭력의 학대 유형 모두에서 스토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관계에서 심각한 스토킹은 심각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는 기존연구(Mechanic, Uhlmansek 등,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스토킹의 위험수준에 따른 가정폭력의 위험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SARA에서는 스토킹의 중위험,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나타났다. DAS에서 스토킹 중위험, 고위험 집단은 가정폭력의 위험수준이 높다는 변별기준점이 되는 7점 이상이 나타났으며, 스토킹 위험수준 저, 중, 고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CL-R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토킹의 위험수준에 따라 PCL-R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토킹의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토킹의 위험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보다 가정폭력의 위험성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 위험성을 평가하는 SARA, DAS, PCL-R

의 채점항목 중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토킹 항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여러 특성들 중 범죄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는 범죄종류(살인/폭력), 일반전과 유무, 가정폭력 전과 유무에 따른 스토킹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살인 집단이 폭력집단에 비해 스토킹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토킹 행위가 가정폭력보다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 사건에서 더 일반적인 전조라고 지적한 기존 연구(Roehl, O'Sullivan, Webster, & Campbell, 2005)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집단이 가정폭력 전과가 없는 집단에 비해 스토킹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사건이나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국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사건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행위(살인이나 폭력 등)를 조사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스토킹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행위 자체라기보다 범죄행위가 진전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스토킹 행위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스토킹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그 유형에 따라 다른 규제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데(김은경, 2003), 특히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과거 배우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는 다른 스토킹 행위보다 폭력적인 가해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이 보다 조기에 개입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이건호, 2007)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토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처를 권고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스토킹과 달리 친밀한 관계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재정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 언어폭력 등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들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접근금지 명령 등의 활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지지 어렵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접근금지 명령이 법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제해야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처방안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후 연구들로 알아보아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점차 심각한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스토킹 행위를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살인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과의 비교연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과 배우자 살인 사건의 과정 중 스토킹 행위가 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끝으로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스토킹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행동 지침들이 마련된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배우자 살인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과정으로서의 스토킹 단계에 개입하여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경 (2003).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14(3), 99-139.
-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국 (2000).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응. *인간과 정치*, 287, 46-56.
- 조희진 (1999).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관한 법

- 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66, 82-91.
- 이건호 (2007).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8(3), 1471-1498.
-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 (2006). 최신 범죄심리학. 북카페.
-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99-126.
- 이시형 (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Baldry, A. C. (2002). From domestic violence to stalking: The infinite cycle of violence. In J. C. W. Boon & L. Sheridan(Eds.),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pp. 83-104). Chichester. UK: Willy
- Burgess, A. W., Baker, T., Greening, D., Hartman, C. R., Burgess, A. G., Douglas J. E., & Halloran, R. (1997). Stalking behavior withi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4), 389-403.
- Campbell, J. C. Webster, D., Koziol-McLain, J. (2003). Risk Factors for Femicide in Abusive Relationships: Results from a Multi-Site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7), 1089-1097.
- Coleman, F. L. (1997). Stalking behavior and the cycle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3), 420-432.
- Davis, K. E., Ace, A., & Andra, M. (2000). Stalking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partner: Anger-jealousy, attachment insecurity, need for control, and break-up context, *Violence and Victims, 15*(4), 407-425.
- Douglas, K. S., & Dutton, D. G. (2001). Assessing the link between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 519-546,
- Douglas, K. S., Ogloff, J. P., Nicholls, T. L., & Grant, I. (1999). Assessing risk for violence among psychiatric patients: The HCR-20 violence risk assessment schem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pathy, 67*, 917-930.
- Guy, R. A. (1993). The nature and constitutionality of stalking law. *Vanderbilt Law Review, 46*(4), 991-1029.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2). Prospective replicat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in predicting violent recidivism among forensic patients. *Law and Human Behavior, 26*, 377-394.
- Harris, G. T., Rice, M. E., & Quinsey, V. L. (1993). Violent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prediction instru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 315-335.
- Hart, B. J. (1992). *Program standards for batterer*

- intervention services*. Reading, PA: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Logan, T. K., Leukefeld, C., & Walker, B. (2000). Stalking as variant of intimate violence: Implications from a young adult sample. *Violence and Victims, 15*(1), 91-111.
- Mcechanic, M. B., Weaver, T. L., & Resick, P. A.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behaviors: Explor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a sample of acutely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5*(1), 55-72.
- Mechanic, M. B., Uhlmansiek, M. H., Weaver, T. L., & Resick, P. A. (2000). The impact of severe stalking experienced by acutely battered women: An examination of violence, psychological symptoms and strategic responses. *Violence and Victims, 15*(4), 433-458.
- Mohandie, K., Meloy, R., A.B.P.P., McGowan, M. G., Williams, J., Dipt, R. A.(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1).
- Mullen, P. E., Pathe, M., & Purcell, R.(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1996). *Domestic violence, stalking, and antistalking legislation: An annual report to Congress 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Washington, DC: Author.
- Roberts, A., & Dziegielewski, S. (1996). Assessment typology and intervention with the survivor of stalk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359-368.
- Roehl, J., O'Sullivan, C., Webster, D., & Campbell, J.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risk assessment validation study, Fin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 Sheridan, L., Boon, J.(2002). Stalker Typologies: Implications for Law Enforcement. In Julian Boon and Lorraine Sheridan (ed.)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John Wiley & Sons, Ltd.
- Tjaden, P. (1997). *The crime of stalking: How big is the problem*.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Tjaden, P., & Thoennes, N. (2000). The Role of Stalking in Domestic Violence Crime Reports Generated by the Colorado Springs Police Department. *Violence and Victims, 15*(4), 427-441.
- USDOJ. (1998).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Author.
- 1 차원고접수 : 2010. 5. 19.  
심사통과접수 : 2010. 6. 17.  
최종원고접수 : 2010. 6. 20.

## **Diagnostics meaning of stalking in domestic violence: stalking as a causative factor of life loss**

**Hye Sun Lee**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nd its impact to domestic violence and spousal homicide. We applie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with means of risk assessment tools. We categorized data based on the criminal records: murder/assault, criminal record/none, domestic violence/non domestic violenc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evel of stalking in each group. In result, staking was apparent in 42.1% of spousal homicide and domestic violence cases, and stalking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total score of DAS, a domestic violence assessment tool. People who murdered their spouses had greater risk in stalking than assault cases of spouses. Domestic violence group had greater risk of stalking than non domestic violence group. Consequent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ha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ign of stalking when they investigated domestic violence cases to prevent victims from loss of life.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spousal murder, stalking, risk assessment test, criminal justice*